

EPO-002 K

총기 폭력 긴급 보호 명령

법집행 사건 번호:

1. 금지 대상자 (이름 기재): _____
주소: _____

성별: 남 여 신장: _____ 체중: _____ 머리 색깔: _____
눈 색깔: _____ 인종: _____ 연령: _____ 생년월일: _____

2. 금지 대상자에 대한 지침

(2페이지에 설명된 중요한 경고 및 정보도 살펴보십시오):

형법 제18120조에 따라 귀하는 귀하가 소유 또는 소지한 총기, 탄약 및 탄창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이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동안 총기, 탄약 또는 탄창을 보관 또는 관리, 소유, 구입, 소지 또는 수령, 또는 구입 또는 수령을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더욱 영구적인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명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의해야 이 명령과 관련된 사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총기, 탄약 및 탄창을 갖고 있다면, 귀하는 법집행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제출해야 합니다. 법집행관이 제출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이 명령을 수령한 지 24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유 면허 총기상에게 매각 또는 보관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 법원에 수령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오른쪽에 명시된 법원에 48시간 이내에 수령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48시간 이내에 수령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이 명령을 위반한 것이 되며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3. 이 명령은 _____ 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21번째 역일 날짜 기재 (명령 발부일 제외)

4. 법원 심리 심리가 21일 이내에 개정될 것입니다.

심리가 위에 명시된 법원에서 다음 일정에 개정될 것입니다. 날짜: _____ 시간: _____

이 금지 명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원 심리에 참석해야 합니다. 판사는 심리에서 이 명령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이 명령 발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며, 이 총기 폭력 긴급 보호 명령은 (1) 금지 대상자가 총기, 탄약 또는 탄창을 보관 또는 관리, 소유, 구입, 소지 또는 수령함으로써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유발할 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며; 그리고 (2) 덜 제한적인 수단이 효과가 없었거나 현재 상황에서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6. 사법관 (이름): _____ 이(가) 본 명령을 (날짜): _____ (시간): _____ 에 발부하였습니다.

신청서

7. 법집행관은 위의 5 항에 명시된 근거가 존재한다고 믿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증거 사실 및 날짜 명시; 무기의 번호, 유형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십시오): _____

8. 총기가 목격됨 보고됨 수색됨 압수됨.
 탄약(탄창 포함)이 목격됨 보고됨 수색됨 압수됨.

본인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한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전술한 내용이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름: _____ (법집행관 이름 정자 기재) (법집행관 서명)

법집행기관: _____ 전화번호: _____ 배지 번호: _____
주소: _____

송달 증명

9. 본인은 이 명령의 사본을 1항에 명시된 금지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송달 날짜: _____ 송달 시간: _____ 주소: _____

10. 송달 시점에 본인은 18세 이상이었습니다.

본인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한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전술한 내용이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날짜: _____ (송달인/법집행관 이름 타자 또는 정자 기재) (송달인 서명)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아래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법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사건 번호를 기입합니다.

사건 번호:

TO THE RESTRAINED PERSON: You are prohibited from owning, possessing, purchasing, receiving, or attempting to purchase or receive a firearm, ammunition, or a magazine. (Pen. Code, § 18125 et seq.) A violation of this order is a misdemeanor punishable by a \$1,000 fine or imprisonment for six months or both. (Pen. Code, §§ 19, 18205.)

Within 24 hours of receipt of this order, you must turn in all firearms, ammunition, and magazines to a law enforcement agency or sell them to or store them with a licensed firearms dealer until the expiration of this order. (Pen. Code, § 18125 et seq.) A receipt proving surrender, sale, or storage must be filed with the court within 48 hours of receipt of this order, or on the next court business day if the 48-hour period ends on a day when the court is closed. You must also file the receipt with the law enforcement agency that served you with this Order. You may use Form GV-800, *Proof of Firearms, Ammunition, and Magazines Turned In, Sold, or Stored*.

This Gun Violence Emergency Protective Order is effective when made. It will last until the date and time in item 3 on the front. The court will hold a hearing within 21 days to determine if a longer-term order should be issued. If the date and time are not stated in item 4 on the front, you will get a notice with the date and time of the hearing in the mail at the residential address listed on page 1 of this form. If you would like to respond to this order in writing you must use Form GV-020, *Response to Gun Violence Emergency Protective Order*. A family member may also seek a more permanent restraining order from the court.

If you violate this order, you will also be prohibited from having in your custody or control, owning, purchasing, possessing, or receiving, or attempting to purchase or receive, a firearm, ammunition, or magazine for an additional five-year period, to begin on the expiration of the more permanent gun violence restraining order. (Pen. Code, § 18205.)

This protective order must be enforced by all law enforcement officers in the state of California who are aware of it or shown a copy of i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order remain enforceable regardless of the acts or any agreement of the parties; it may be changed only by order of the court.

금지 대상자에 대한 지침: 귀하는 총기, 탄약 또는 탄창을 소유, 소지, 구입, 수령 또는 구입 또는 수령을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형법 § 18125 이하 참조).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1,000 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실형,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병과하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형법, §§ 19, 18205).

귀하는 이 명령을 수령한 지 24시간 이내에 총기, 탄약 및 탄창을 법집행기관에 제출하거나, 이 명령의 만료일까지 유 면허 총기상에 매각 또는 보관해야 합니다(형법, § 18125 이하 참조). 이 명령을 수령한 지 48시간 이내 또는 해당 48시간이 법원 업무일이 아닌 날짜에 만료될 경우 그다음 업무일에, 귀하는 제출, 매각 또는 보관을 증명하는 수령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귀하에게 본 명령을 송달한 법집행기관에도 수령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GV-800(총기, 탄약 및 탄창 제출, 매각 또는 보관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총기 폭력 긴급 보호 명령은 발부되는 순간 효력이 발휘됩니다. 이 명령은 앞 장의 제3항에 명시된 날짜 및 시간까지 유효합니다. 법원은 21일 이내에 더욱 장기간 명령의 발부 여부를 결정할 심리를 개정할 것입니다. 제4항에 날짜 및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귀하는 심리 날짜 및 시간에 대한 통지문을 본 양식 1페이지에 명시된 주소로 우편 수령하게 됩니다. 본 명령에 서면으로 답변하고 싶을 경우, 귀하는 양식 **GV-020(총기 폭력 긴급 보호 명령에 대한 답변)**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또한 더욱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총기, 탄약 또는 탄창을 보관 또는 관리, 소유, 구입, 소지 또는 수령, 또는 구입 또는 수령을 시도하는 것이 더욱 영구적인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의 만료일로부터 추가로 5년 동안 금지됩니다(형법 § 18205).

이 보호 명령은 이 명령에 대해 인지하고 있거나 또는 이 명령의 사본을 본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법집행관에 의해 집행됩니다. 이 명령의 조건은 당사자의 행위 또는 합의와 관계없이 집행의 효력을 지속하며,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To law enforcement: The Gun Violence Emergency Protective Order must be served on the restrained person by the officer if the restrained person can reasonably be located. Ask the restrained person if he or she has any firearms, ammunition, or magazines in his or her possession or under his or her custody or control. A copy must be filed with the court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issuance so a hearing can be set, if one was not already scheduled. If the court did not give you a hearing date when issuing the order (to put in item 4 on the front), the court will set a hearing within 21 days and will provide you with notice of the hearing. Also, the officer must have the order entered into the computer database system for protective and restraining orders maintain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 provisions in this temporary Gun Violence Emergency Protective Order do not affect those of any other protective or restraining order in effect, including a criminal protective order. The provisions in another existing protective order remain in effect.

법집행에 대한 지침: 금지 대상자의 위치가 합리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경우, 법집행관이 금지 대상자에 대한 총기 폭력 긴급 보호 명령을 송달해야 합니다. 금지 대상자에게 총기, 탄약, 또는 탄창을 소지하고 있거나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하십시오. 발부 후 실행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원에 사본이 제출되어야 심리 일정이 잡힐 수 있습니다(아직 심리 일정이 안 잡힌 경우). 명령 발부 시 법원이 귀하에게 심리일(앞장 제4항에 기재할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21일 이내에 심리를 개정할 것이며 귀하에게 심리 통지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법집행관은 법무부가 유지하는 보호 및 금지 명령에 대해 해당 명령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 임시 총기 폭력 긴급 보호 명령의 규정들은 형사 보호 명령을 포함하여 효력을 발효 중인 다른 보호 또는 금지 명령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기존 보호 명령의 규정들은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